본 자료는 2023. 8. 28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 · 통신 · 방송은 8. 27(일) 12:00시부터 보도 가능)

손해보험협회
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

보 도 자 료

2023. 8. 25(금)

▣ 자료 문의 : 소비자보호정책팀 황선홍 팀장 3702-8652 / 홍보팀 이웅노 팀장 3702-8582

「실손의료보험 보상(비급여)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」 안내

"치료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!" 카드뉴스 제작

▶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(5가지) 선정·유의사항 안내

□ 손해보험협회(회장 정지원)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·배포

○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「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('23.8.11)」에 따르면,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(36.8%)을 차지하였는데, 대부분이 보상 관련 민원(63.0%)이었음

○ 이에, '23년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중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(5가지)을 선정하여,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

<주요 비급여 항목(5가지)>

❶ 백내장 수술, ❷ 도수치료, ❸ 비밸브 재건술, ❹ 피부 창상피복재, ❺ 전립선 결찰술

□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"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,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다"며, "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"고 밝혔음

□ 한편, 카드뉴스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(www.knia.or.kr) → 알림·소식 → 소비자 정보제공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회사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

※ 붙임 : 「실손의료보험 보상(비급여)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」 카드뉴스 1부. 끝.

별 첨 **주요 사례**

❶ 백내장 수술

□ **(관련법 위반 사례)** 금융감독원은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 **검사 시행일자**를 **조작**하여 **보험금**을 **편취**한 **사례 적발**

(사례) A병원은 '13년부터 브로커들이 유인·알선해온 환자들에게 **백내장 수술**을 하면서 실제 **통원**하면서 **검사**한 것을 **입원**한 후 **시행**한 것으로 **조작**하거나,

- 하루에 **동시수술**을 이틀에 걸쳐서 **각각 수술**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**허위 진단서**를 작성·발급

- **거짓 기재**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**건보 요양급여**(3,780만원)를, 환자들은 **민영보험금**(9명, 7,073만원) **편취**

※ 허위진단서 작성·건보 급여 편취한 의사(벌금 1,500만원) 및 브로커(벌금 700만원) 등

[금융감독원 보도자료('22.1.25.)]

□ **(소비자 피해 사례)** **한국소비자원**에 접수('19 ~ '22.6월)된 **백내장 수술** 관련 **피해구제 신청 51건** 중,

○ **수술 후 시력 저하**를 **호소**한 사례가 **43.1%**(22건)로 가장 많았고, **실명**과 **빛 번짐·눈부심**은 각 **23.5%**(12건), **안내염** 발생 19.6%(10건) 등의 순으로 **확인**

[표]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호소 현황(복수응답)

(단위 : 건, %)

구분	시력저하	실명	빛번짐·눈부심	안내염	망막질환	후낭파열	후발 백내장	섬모체 소대 해리	기타*
건수 (비율)	22(43.1)	12(23.5)	12(23.5)	10(19.6)	8(15.7)	5(9.8)	5(9.8)	5(9.8)	8(15.7)

* 인공수정체 탈구, 황반질환, 복시·비문증·안구통증 등

(사례1)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, 빛 번짐 발생

- A씨(여, 60대)는 '21.6.7, 6.14.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**다초점인공수정체** 삽입술을 받은 후 **시력 저하, 빛 번짐, 난시** 증상이 발생하여 **난시교정용 안경을 착용**하게 됨

(사례2)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, 빛 번짐으로 시력교정 수술 권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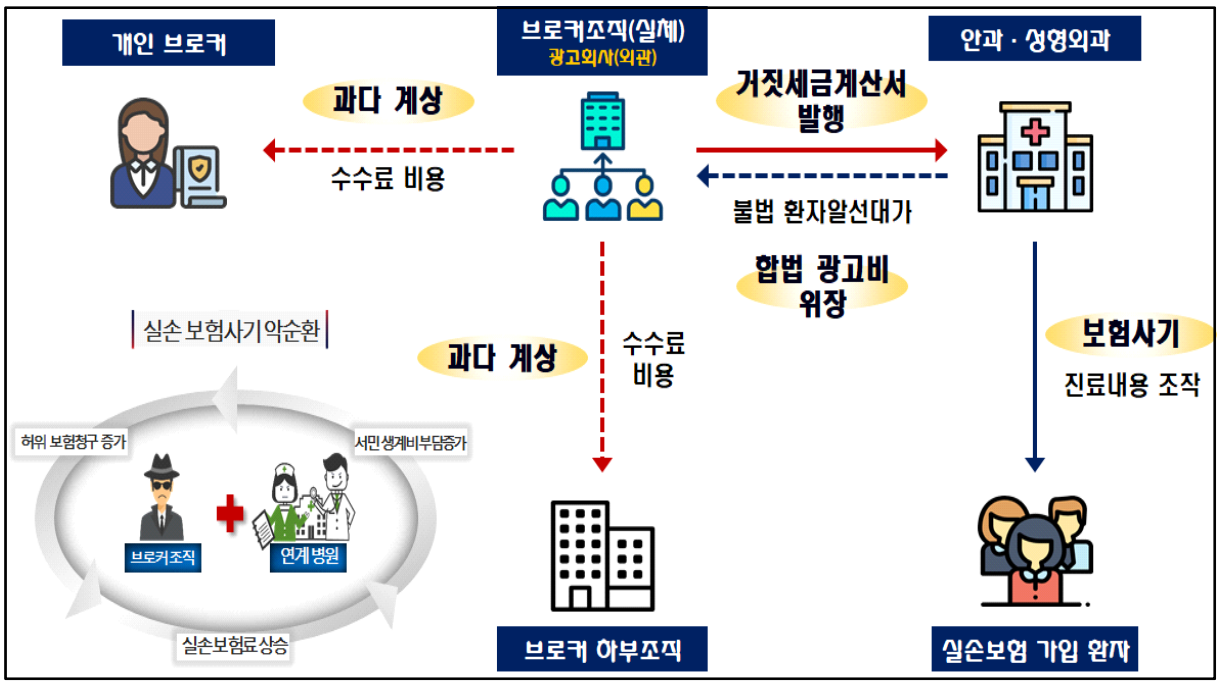
- B씨(여, 50대)는 '21.10.29.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**다초점인공수정체** 삽입술을 받은 후, 후발 백내장이 발생하여 '22.1.7. 야그레이저 수술을 받았으나 **시력 저하, 빛 번짐**이 지속됨, 이에 같은 해 3.10.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결과 **시력교정 수술을 권유**받음

(사례3)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

- C씨(여,40대)는 '21.2.10. 좌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**단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**을 받은 후 **안내염**이 발생해 '21.3.2.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음

[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'22.8.16.)]

□ **(브로커 조직 관련 사례)** 국세청은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**병·의원**에 **알선**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**세금**을 **탈루한 브로커 조직**과 **연계 병원**에 일괄 **세무조사 진행**



[국세청 보도자료('22.7.27.)]

(사례) A는 외관상 광고업체이나 **실제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**으로

- 환자의 본래 치료 외에 다른 질환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**안과·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**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**실손보험금을 편취**

 *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·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,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보험가입자 전체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

- 또한, 병·의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환자 알선대가를 수취하면서 정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**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**하고,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**수수료 비용**을 **과다 계상**

- 한편, 해당 병의원들은 실손 보험금 편취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브로커 조직에 지급한 **불법 알선대가**를 **정상 광고비로 처리**

※ 브로커 조직과 연계 병의원 및 하부조직의 탈루 혐의로 일괄 세무조사

❷ 도수치료

□ **(보험사기 적발 사례)** **의료인**이 아닌 **상담실장**(브로커 포함) 등이 **보험가입 여부**를 **확인**한 후, **비용**은 **실손보험 적용**이 되는 **도수치료**로 **처리**해 주고 **성형·피부미용** 시술 등을 **제안**

(사례1) 상담 직원이 "**원하는 성형수술, 미용시술을 80~90% 할인된 가격**에 받을 수 있고,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드림"이라는 제안에,

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(코, 쌍커풀 등), 미용시술 등을 받은 25명 적발
→ **벌금형**(50~350만원) 및 **지급 보험금 반환**

(사례2) 상담 실장이 "**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,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 가능**"하다는 제안에,

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(미백, 안티에이징 등)을 받은 10명 적발
→ **벌금형**(50~100만원) 및 **지급 보험금 반환**

(사례3) 상담 실장이 "도수치료와 함께 **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**"는 제안에

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(OO주사, 레이저, 제모 등)을 받은 20명 적발
→ **벌금형**(200~300만원) 및 **지급 보험금 반환**

※ 의사, 병원 內 이사(인사관리, 내원 환자 상담 등 업무), 상담실장 등도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등 위반으로 처벌받음

[금융감독원 보도자료('23.6.9.)]

□ **(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)** **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**는 **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**하여 **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**이 있다는 **조정결정**을 한 바 있음

(사례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**허리통증** 등으로 **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A씨에게 B의사가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**하여 **상태가 더욱 악화**된 사건에 대해 **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**

[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'20.11.10.)]

❸ 비밸브재건술

□ **비밸브 재건술**은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해 **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시술**로

○ 코 위쪽 부위에 연골을 덧대어 연골을 곧게 펴주는 방법으로 **코가 높아지는 외형상의 변화가 일부 발생**

○ **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**으로 **비밸브재건술을 코성형의 수단으로 악용**되는 **사례 발생**

(사례) A씨(21세, 남)는 **최근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ㅇㅇ성형외과**에서 **휜 코를 교정**하고 **콧볼을 축소**하는 **성형 수술**을 받고 **"코뼈가 휘어 만성 축농증이 있다"**며 **치료**를 위해 **수술**했다며 **보험사**에 **수술비 440만원**을 **청구**

-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애초에 **미용 목적**으로 **수술**을 받고 **허위**로 **보험금**을 **타갔다고** 보고 **해당 병원**을 **조사하던 중**에 **A씨**의 **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**, 원래 **치료 목적의 수술**에는 **부가세**가 붙지 않는데, **매출 전표**에는 **수술비 400만원**에 **부가세 40만원이 붙어 있었던 것임**

- A씨처럼 **제대**하기 전에 **휴가**를 나와 **이비인후과**나 **성형외과**에서 **'비중격만곡증(코뼈가 휘어진 상태)' 진단**을 받고 **코뼈 교정 수술**을 **받는 식**으로 **일부 병원**은 **군인**들을 **전담**하는 **'군인 전문 성형 코디네이터'**를 두기도 함

※ 출처 : 동아일보('21.6.29), 코 성형을 축농증 수술로 위장, 실손보험금 타먹기, 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economy_general/2021/06/29/AQDHXZWQ4VGEVJGZS7UV3PQR4I/

❹ 피부 창상피복재

□ **치료**는 **의료진**이 **주체**가 된 **의료행위**를 **의미**하므로 **의사**가 **직접** 또는 **간호사 등 의료진**을 통해 **실시**한 경우에 **해당***

* 의사의 직접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을 통해 보습제가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의사의 처치를 위한 재료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2019.8.30.선고 2018다2516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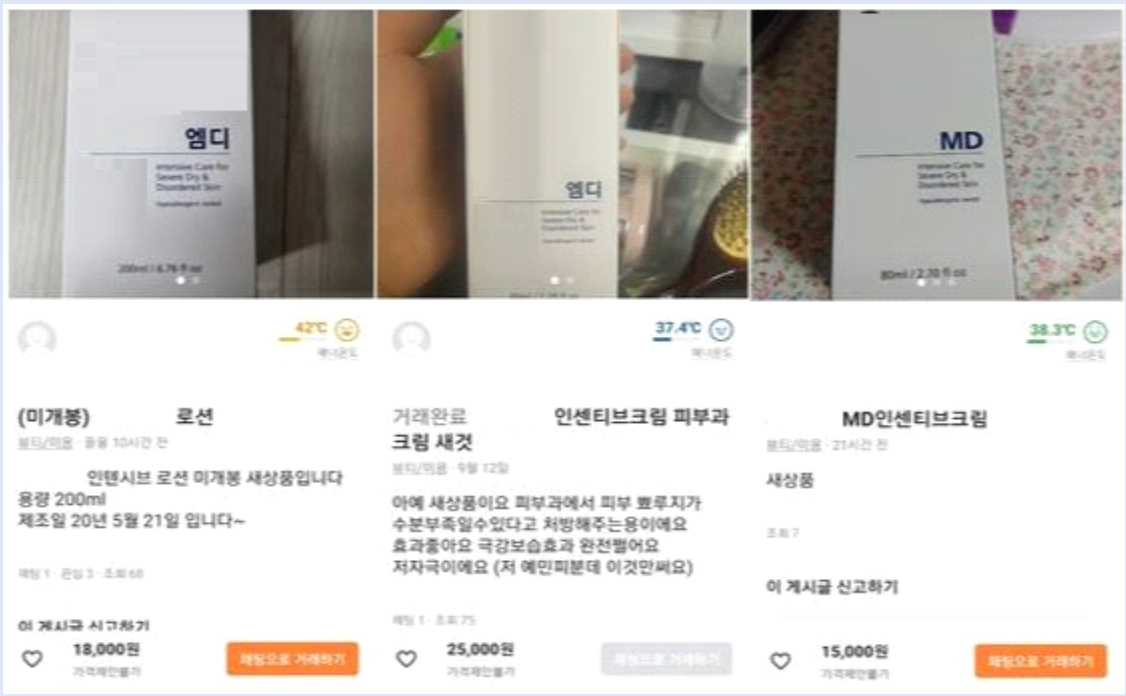
○ **MD크림**은 식약처 허가*를 받은 **의료기기**로 **의료기기법**에 따라 **허가·신고를 한 자**(의료기기 제조업자 등)와 **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**(의사)등이 **취급**할 수 있음

* 화상이나 건조한 피부장벽이 손상된 피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

○ **일반인**이 **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다량의 MD크림**을 **중고거래를 통해 판매**하여 **의료기기법**을 **위반**한 **사례 발생**

(사례)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피부과를 찾은 A씨(20대, 여성)는 병원에서 **MD크림을 처방받음**

- A씨는 병원에서 **개당 3만원**씩 **MD크림**을 **처방**받았으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보험금에서 개당 **22,000원 가량**을 **돌려받고**, 해당 크림을 **당근마켓** 등 **중고거래 플랫폼**을 통해 판매



※ 출처 : 중앙일보('22.1.5.) 실손보험 처리, 당근마켓서 리셀에…MD크림 보험금 안 준다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8389